

3. 地籍法中改正法律

法律 第4405號 1991. 11. 30

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5조제1항중 “운동장”을 “체육용지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중 “군의 읍·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”를 “군의 읍·면에는 지적공부(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인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를 말한다)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·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지목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“운동장”은 “체육용지”로 보며,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 중 이 법에 의하여 “체육용지”로 될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체육용지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,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전산처리하는 지적공부의 등기사항을 대장과 전산등기 화일에 이중으로 정리 하던 것을 전산등록 화일에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정리·보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,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목증 운동장을 체 육용지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